中華民國 社會教育法과 圖書館法

沈 暻 俊 抄譯

本稿는 中華民國 教育部 社會教育司에서 1965年 刊行한 〈社會教育概況〉 附錄 社會教育法令中에서 中華民國의 圖書館制度를 規定하고 있는 "社會教育法" "各省市·公私立圖書館規程" "各級學校 및 各機關團體圖書館(室)設置와 閱覽規程" 및 "圖書教育普及法"等 네가지를 抜萃하여 譯한 것이다.

譯文中 "總統令"은 "大統領令"에 該當되고 "教育部"는 "文教部", "省"은 "道", "縣"은 "郡", "鄕"은 "面" "主任"은 館級에 따라 課長 또는 主任을 各各 뜻함을 밝혀 둔다.

社會教育法

(1653年9月24日 總統令公布
1960年3月28日 總統1883令으로修正)

第1條 本法은 憲法 第158條 및 163條에 依據하여 이를 制定한다.

第2條 社會教育實施의 對象은 一般國民으로 하되, 就學年齡이 넘었서도 基本教育을 받지 못한 者는 一律的으로 講習을 받아야 하며, 이미 基本教育을 받은 者는 學業을 繼續할 수 있도록 進學의 機會를 賦與한다.

第3條 社會教育의 主要任務는 다음과 같다.

ㄱ. 民族精神 및 國民道德을 啓發.
ㄴ. 科學知識 및 國防意識을 注入.
ㄷ. 公民自治 및 四權行使를 訓練.
ㄹ. 語文知識 및 文盲退治를 增進.
ㅁ. 衛生觀念 및 體力向上을 圖謀.
ㅂ. 藝術興味 및 禮樂崇尙을 培養.
ㅅ. 名勝地 및 史蹟遺物을 保護.
ㅇ. 通俗書 및 民俗樂을 改良.
ㅈ. 生活才能을 길러 주고, 生産競爭을 推進.
ㅊ. 其他 社會教育에 關한 事項.

第4條 省(市)은 반드시 社會教育館을 設立하고 各種 社會教育事業을 實施하며 또한 當地의 社會教育의 發展을 輔導한다.

縣(市) 鄕(鎭)은 그 財力과 需要에 따라 社會教育館 或은 社會教育推進委員會를 設置한다.

第5條 中央 및 省(市) 縣(市)은 그 財力과 社會의 需要를 重要視하여 다음과 같은 社會教育機構를 設置 認准한다.

ㄱ. 圖書館
ㄴ. 博物館(科學·藝術·民族文化等을 包含)
ㄷ. 體育館 或은 體育場
ㄹ. 特殊學校(盲啞·不具者等學校)
ㅁ. 其他 社會教育과 關係 있는 機構

前項 第2條에 併設한 各社會教育機構는 財力이 充分할 時, 別途로 設立한다.

第6條 國民學校는 法律에 依하여 文盲者를 退治하는 講習을 한다.

第7條 省(市) 縣(市) 및 公立學校, 教育機關, 公營事業機構는 法律에 依據하여 設立하고 或은 講習所를 附設한다.

第8條 各種 社會教育機構는 中央에서 設立하는 것은 國立, 省(市)에서 設立하는 것은 省立, 縣(市)에서 設立하는 것은 縣立, 鄕에서 設立하는 것은 鄕立, 個人 或은 團體에서 設立하는 것은 私立으로 한다.

第9條 個人 或은 團體에서 設立한 教育機構의 規程 및 奬勵方法은 教育部가 이를 定한다.

第10條 社會教育機構의 設立變更 및 取消는, 省에서 設立하는 것은 반드시 省教育行政機關이 教育部에 이를 申請한다. 縣(市) 및 私立 或은 團體가 設立하는 것은 省(市) 教育行政機關이 上申하여 批准을 얻어 教育部에 이를 轉報한다. 鄕(鎭)에서 設立하는 것은 縣(市)의 批准을 얻어 省教育行政機關에 이를 轉報한다.

第11條 社會教育의 實施는 一定한 場所 및 班級에 따라 授業하는 外에 또한 移動 및 露天을 쓰며 集會·講演·討論·展覽·試合·通信教育 및 其他 有効한 方法으로써 이를 施行한다.

第12條 各級教育行政機關은 반드시 專門的인 社會教育行政機構를 設置하고 또한 專任 社會教育 指導員을 둔다.

第13條 社會教育者의 招聘, 任用 및 待遇는 따로 法律로써 이를 定한다.

第14條 中央 및 省 (市) 縣 (市)은 반드시 社會敎育費를 마련하고 또한 各 當該 敎育費豫算內에 社會敎育費條目을 넣는다.

僻地 및 貧民地區의 社會敎育施設費는 國庫 或은 省庫의 經費로써 이를 補助한다.

第15條 社會敎育의 敎材는 一般的인 것은 敎育部에 依하여 要綱을 定하고 省 (市) 縣 (市) 의 敎育行政機關은 地方의 特殊事情에 따라 이를 增訂하며 各種 敎材 및 敎育道具는 敎育部의 審査를 거친 後, 이를 採用하여야 하며, 그 採用方法은 敎育部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6條 國立社會敎育機構의 組織은 法律로써 이를 定한다. 各級 社會敎育機構의 設備基準은 敎育部가 이를 定한다.

第17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各省市公私立圖書館規程

1952年12月5日 行政院臺敎字第6810條令으로 批准.
同年12月18日 敎育部臺社字第 10817 號令으로 公佈.
1954年1月13日 敎育部社字第502號令으로 第10條 條文을 修正.

第1條 各省市公私立圖書館은 各種 圖書 및 地方文獻을 蒐集함으로써 一般에게 閱覽을 目的으로 하며, 또한 其他 各種 敎育事業을 主管하여 文化水準을 向上시킨다.

第2條 各省 (行政院直轄市以下도 이에 準한다) 은 最少限 省에 各各 一個의 圖書館을 設置하고 各縣 (普通 市 以下는 이에 準한다)은 公共(民衆) 敎育館內에 반드시 圖書館을 附設하고 人口가 많고 經濟가 潤澤한 地域은 單獨으로 縣立圖書館을 設立한다.

第3條 圖書館의 設立變更 및 廢館은 省에 依해 設立된 것은 省이 반드시 書類로써 敎育部에 이에 대한 批准을 請한다. 縣이 設立한 것은 반드시 縣이 敎育廳에 批准을 請함과 아울러 敎育部에 이를 轉報한다. 設立時는 반드시 다음 事項을 具備해야 하며 省 或은 縣은 書類를 보내서 이에 따른 認准을 받는다.

ㄱ. 名稱
ㄴ. 場所
ㄷ. 經費 (經費와 運營을 分離하고 그 財源의 出處를 밝힌다)
ㄹ. 建築 (設計圖 및 計劃案)
ㅁ. 藏書 (現藏書의 種類와 册數를 詳細히 報告)
ㅂ. 館則
ㅅ. 職員 (館長·館員의 學歷·經歷·職務·俸給等)

第4條 圖書館은 반드시 個人이나 或은 法人에 依하여 設立되며 이를 私立圖書館이라 稱한다.

第5條 私立圖書館은 理事會가 그 設立者의 代表가 되어 同圖書館을 經營하는 全責任을 지고, 財產을 管理, 館長을 推薦, 雇傭人의 事務를 監督, 豫算 決算을 決議할 權限을 갖는다. 初代理事는 設立者에 依하여 招聘되며 以後부터는 理事會自體가 이를 選任한다.

第6條 私立圖書館의 設立變更 및 廢館은 理事會에 依하여 當地 敎育行政을 主管하는 敎育廳에 申請하여 許可를 얻어야 하며 上級敎育行政機關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設立時는 반드시 다음 事項을 具備하고 書類를 보내어 이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ㄱ. 名稱
ㄴ. 場所
ㄷ. 經費 (基金項目 및 年收入을 詳記하고 支出은 經費와 運營費로 나눈다.
ㄹ. 建築 (設計圖 및 計劃案)
ㅁ. 藏書 (現藏書의 種類 및 册數를 詳細히 記入)
ㅂ. 館則
ㅅ. 理事 (姓名, 本籍, 職業 및 住所)
ㅇ. 職員 (館長 館員의 學歷, 經歷, 職務, 俸給等)

第7條 省市立圖書館은 3課 乃至 5課를 設置하고 아래와 같은 各事項을 分掌한다.

ㄱ. 購入·受贈·交換·登錄·分類·編目等에 關한 事項
ㄴ. 閱覽·典藏·參考·相互貸借等에 關한 事項.
ㄷ. 特藏한 金石輿圖, 貴重本 및 地方文獻等에 關한 事項.
ㄹ. 調査·統計·研究·實驗·視察·輔導·宣傳 및 圖書館員의 講習과 訓練等에 關한 事項.
ㅁ. 庶務 및 其他에 關한 事項.

前項대로 各課를 두고, 반드시 各 當該 敎育行政機關은 實際 情狀을 參酌하여 이의 實施方法을 따로 定한다.

第8條 縣立圖書館은 2係 乃至 4係를 두고 다음과 같은 事項을 分掌한다.

ㄱ. 購入·受贈·交換·登錄·分類·編目等에 關한 事項.
ㄴ. 閱覽·典藏·參考·相互貸借等에 關한 事項.
ㄷ. 講演·放送·文盲·展覽·讀書指導·講習 및 圖書館敎育等에 關한 事項.
ㄹ. 文書·會計·庶務 및 其他에 關한 事項.

前項대로 各係를 두고, 반드시 各 當該 敎育行政機關은 實際情狀을 參酌하여 이의 實施方法을 따로 定

한다.

第 9 條 圖書館은 閱覽의 便利를 圖謀하기 위해 分館을 設置하고, 文庫를 巡廻하며 圖書室 (站) 및 代行室 (代辦處)을 設置하고 學校의 敎學에 必要한 圖書閱覽에 對한 일을 協助하여야 한다.

第10條 圖書館은 館長 1人을 두고 館務를 綜合的으로 處理케 한다. 省立의 囑託 或은 特採 (中華民國政府의 文官)는 省敎育行政機關에 依하여 本規程 第12條에 適宜한 資格所持者를 選定하여 省에 內申하여 法에 따라 이를 任用하고 敎育部에 이를 報告한다. 縣이 推薦 或은 委任하는 것은 縣에 依하여 本規程 第15條에 適宜한 資格所持者를 選定하고 敎育廳에 內申하여 法에 따라 이를 任用하며 敎育廳은 必要時 即時 이에 適宜한 者를 選任하여 法에 따라 任用한다. 私立은 理事會에 依하여 本規程 第19條의 規定에 따라 人員을 嚴選하여 이를 補充하고, 主管敎育行政機關에 依하여 이를 申請한다.

第11條 圖書館 各課 (係)는 各各 主任 1人과 幹事 若干名을 둔다. (主管敎育行政機關은 各館 事務의 繁簡에 따라 最高 或은 最低 人員數를 規定한다) 公立은 館長이 本 規程 第13, 14條 및 第16條에 依하여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한 者를 法에 依하여 任用하고 主管 敎育行政機關에 이를 報告한다. 私立은 館長이 本規程 第19條의 規定에 따라 優秀한 者를 選定하여 이를 補充하고 主管 行政機關에 이를 申請한다.

圖書館長은 1課 (或은 1係)의 主任을 兼해야 하나 兼職手當을 받을 수는 없다.

第12條 省立圖書館長은 반드시 人格이 있는 者로서 高邁한 學識을 가진 俊才여야 하며 다음의 資格 하나를 具有해야 한다.

ㄱ. 圖書館專門學校 或은 圖書館專修科를 卒業한 者로서 圖書館職務에 1年 以上 勤務한 成績이 優秀한 者.

ㄴ. 師範大學·敎育大學 或은 敎育科를 卒業한 者로서 圖書館職務에 2年以上 勤務한 成績이 優秀한者.

ㄷ. 大學 或은 其他 專門學校를 卒業하고 圖書館專門訓練을 받은 者로서 圖書館職務에 3年以上 勤務한 成績이 優秀한者.

ㄹ. 學問에 特殊한 貢獻을 이룬 者로서 圖書館學에 對하여 平素 硏究한 者.

第13條 省立圖書館 各主任은 반드시 훌륭한 人格을 가진 者로서 맡은 바 任務에 指揮能力이 있어야 하고 다음 資格中 하나를 具有해야한다.

ㄱ. 圖書館專門學校 或은 圖書館專修科를 卒業한 者

ㄴ. 師範大學·敎育大學 或은 敎育科를 卒業한 者·

ㄷ. 大學 或은 其他 專門學校 卒業者로서 圖書館專門訓練을 받은 者.

ㄹ. 中學校 卒業者로서 圖書館職務에 3年以上 勤務한 者.

第14條 省立圖書館 幹事는 반드시 高邁한 人格을 가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資格中 하나를 具有해야 한다.

ㄱ. 前條 各項의 資格中 하나를 具有한 者

ㄴ. 中等學校 卒業者로서 敎育에 2年以上 從事한 者

ㄷ. 圖書館職務에 對하여 相當한 學識 및 經驗이 있는者

第15條 縣立圖書館長은 반드시 高邁한 人格과 學識이 兼備한 俊才로서 다음 資格中 하나는 가져야 한다.

ㄱ. 圖書館專門學校 或은 圖書館專修科 卒業者

ㄴ. 師範大學·敎育大學 或은 敎育科 卒業者.

ㄷ. 大學 或은 其他 專門學校를 卒業하고 圖書館 專門訓練을 받은 者.

ㄹ. 學術上 確實히 貢獻을 이루고 圖書館學을 平素 硏究한 者.

第16條 縣立圖書館 各主任 및 幹事는 반드시 高邁한 人格을 가진 者로서 다른 資格中 하나는 具有한 者라야 한다.

ㄱ. 前條 各項의 資格中 하나는 가진 者.

ㄴ. 中等學校卒業者로서 敎育에 1年以上 從事한 者.

ㄷ. 圖書館職務에 대하여 相當한 學識 및 經驗이 있는 者.

第17條 圖書館에는 반드시 副幹事를 둔다.

第18條 省立圖書館은 會計員 1人을 두되 委任은 主로 法令의 規定에 따라 當該館의 豫算 會計 事務를 擔當 處理하며 各 當該館의 指揮를 받고 當該 上級機關이 處理하는 會計員의 監督指揮를 따로 받는다.

第19條 私立圖書館의 組織은 縣立圖書館의 規定을 參照하여 그 館長 및 職員은 반드시 中等以上의 學歷을 가진 者를 任命해야 한다. 但 設立者自身이 館長이 되는 것은 此限에 不在한다.

第20條 圖書館은 다음의 各種 會議를 開催하여야 한다.

ㄱ. 館務會議는 館長 各主任 및 會計員에 依하여 이를 組織하고 館長이 議長이 되어 全館의 모든 發展을 爲하여 革新事項을 討議하며 每月 1回씩 會議를 開催한다.

ㄴ. 報道나 宣傳을 爲한 會議는 館長 主任 및 各 當該處와 有關된 敎育行政機關의 代表로 이를 組織하고 館長이 會長이 되어 館務處理 報道 或은 宣傳事項을 議論하며 半年만에 1回씩 會議를 開催

한다.

第21條 圖書館은 반드시 會計監査委員會를 設置하고 各主任 및 全幹事에 依하여 3人 乃至 5人을 委員으로 推薦하여 (會計 庶務는 委員이 될 수 없다) 이를 組織하고, 委員은 輪番으로 會長이 되며 收入 支出簿를 對內에서 監査하고 每月 1回씩 會議를 開催한다.

第22條 圖書館은 事業의 發展을 圖謀하는 見地에서 地方과 關係 있는 機關 社會團體 및 圖書館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人士로 構成된 組織과 其他 各種 委員會와 連絡한다.

第23條 省立圖書館은 반드시 縣立 및 私立圖書館을 輔導하며 또한 事業의 連絡을 企圖하기 爲하여 그 輔導方法을 따로 定한다.

第24條 圖書館은 반드시 會計年度가 시작되기 前에 翌年度事業의 進行計劃 및 經費豫算書를 準備하여 主管敎育行政機關에 이를 報告하고 上級 敎育機關에 이를 轉報한다.

第25條 圖書館은 會計年度가 끝난 뒤에 前年度의 業績報告 및 決算報告를 만들어 主管 敎育行政機關에 報告하고, 上級敎育行政機關에 이를 轉報한다.

第26條 圖書館의 經常費配定의 基準은 人件費가 百分之五十을 넘지 말아야 하고, 事業費 및 圖書購入費는 百分之 四十을 넘지 말아야 하며, 事務費는 百分之十으로 한다.

第27條 圖書館設備基準은 따로 이를 定한다.

第28條 圖書館事業細則은 館에 依하여 定하고 縣立은 반드시 縣에 報告하여 許可를 받고, 敎育廳에 이를 轉報한다. 省立은 반드시 省敎育行政機關에 이를 報告하여 許可를 받고 敎育部에 이를 轉報한다.

第29條 圖書館은 반드시 各種 財産目錄 및 閱覽記錄을 갖추어 監査를 받는다.

第30條 圖書館을 休館하면 그 다음날 休暇日의 未決을 處理해야 하며 事業의 性質에 따라 職員을 前後班으로 나누고 서로 休暇日에 交代로 勤務한다. 冬期 夏期放學 동안은 반드시 當地 學校의 放學期를 보아 職員을 兩組로 나누어 交代로 勤務하고 平常時와 뜩 같이 業務를 進行한다.

第31條 圖書館의 勤務는 8時間을 原則으로 하되, 地方事情을 參酌하여 夜間에도 開館한다.

第32條 本規程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各級學校 및 機關團體圖書館의 閱覽方法

(1941年6月3日 敎育部第21412號令으로公佈)

1. 本法은 全國圖書館敎育暫定法 第6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이를 定한다.
2. 各級學校 및 各機關團體가 附設한 圖書館(室)(以下는 各 圖書館(室)을 略稱한다)은 一律的으로 開館하여 一般에게 閱覽시킨다.
3. 各圖書館(室)은 特殊한 事情으로 따로 一般閱覽時間을 마련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반드시 每日 開館하여 一般 閱覽을 許可한다.
4. 各圖書館(室)은 規模가 比較的 크거나 或은 專門的인 性格을 띠운 것이라면 반드시 一般 參考圖書를 社會人士에게 閱覽시키는 外 (貸出方法은 各圖書館自體가 이를 定한다)에 通俗書 刊行物 및 日刊新聞部를 特殊閱覽室에 備置하여 一般에게 供覽시킨다.
5. 各圖書館(室)은 鄕·鎭의 協助를 얻어 圖書 및 新聞閱覽室을 設置하고 圖書 및 新聞을 紹介 或은 陳列하여 閱覽케 한다.
6. 各圖書館(室)은 每日의 開館時間 或은 一般閱覽時間을 通告하여 알게 하고 이를 宣傳勸導하기 爲하여 讀書會를 열어 試合을 시킴으로써 讀書熱을 提高시킨다.
7. 各級學校 및 各機關團體는 輪番으로 職員을 派遣하여 圖書館員이 하고 있는 閱覽業務를 協助한다.
8. 各圖書館(室)은 一般의 閱覽狀況을 알리는 여러가지 그래프를 提示하여 參考에 資한다.
9. 各 圖書館(室)은 年度末에 當年의 閱覽業務를 報告하고 主管 敎育行政機關에 이를 轉送한다.

全國圖書敎育普及法

(1941年2月24日 敎育部公佈
1943年12月21日 第62351號部令으로修正
1944年11月12日 第56618號部令으로修正)

第1條 敎育部는 全國에 圖書敎育을 普及하고 文化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한 見地에서 特히 本法을 制定한다.

第2條 各省 (院直轄市는 이에 準한다)은 이미 省立圖書館을 設置하였고, 그 設備를 充實히 할 方法을 세워 그 效能을 發揮하고 아직 設置치 못한 곳은 一律的으로 設置하여야 하며, 各 省은 적어도 于先 一個所는 세워야 하며, 經濟能力이 許諾하는대로 地方의 需要에 따라 增設하여야 한다.

第3條 各縣 (省直轄市는 이에 準한다)은 經濟能力에 따라 縣立圖書館을 設置하거나 或은 民衆敎育館內에 圖書室을 附設해야 하며, 經濟가 潤澤치 못한 縣은 省에 依存하여 實情을 陳情하여 補助를 얻는다.

第4條 各 鄕鎭은 곧 書報 (圖書와 新聞) 閱覽室 1個所를 設置하고 漸次 增設해야 하며 恒常 書報閱覽室

一個所를 保有하기 爲하여 그 經費는 鄕鎭의 自費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貧民鄕 鎭은 縣의 補助를 받는다.

第5條 各級圖書館은 可及的 鎭에 集中하고 人口가 稠密한 地域에 分館 및 書報閱覽室을 두어 閱覽에 便利케 한다.

第6條 各級學校 및 各機關團體가 附設한 圖書館은 반드시 一律的으로 開館하여 一般에게 閱覽토록 할 것이며 開館方法은 따로 定한다.

第7條 各級 圖書館은 圖書館 業務를 遂行하는 規程에 따라 圖書敎育事業을 輔導하는 以外에 또한 書報配付處를 設置한다. 各 當該 下級 圖書室 및 書報閱覽室의 書報 貸出 方法은 別途로 한다.

第8條 各級圖書館의 書報는 情狀을 參酌하여 個人의 委託을 받고 代身 書店이나 다른 圖書館에서 購入 또는 借覽한다.

第9條 各級 圖書館의 書報供給은 當該 圖書館長에 依하여하되 館長이 主任業務까지를 兼任하고 館內의 職員을 分館에 指名派遣하여 業務를 協助케 하고 必要時에는 專門家를 두고 所要經費는 當該圖書館 豫算內에 支出項目을 添加한다.

第10條 圖書館經常費는 每年 省立은 五萬元, 縣立은 一萬五千元, 鄕鎭의 書報閱覽室은 二千元 以下여서는 안되며, 配定은 圖書館規程 第26條에 依據한다.

第11條 鄕鎭의 書報閱覽室은 鄕鎭中心地의 學校에 附設하거나 國民學校에 두어 運營한다.

第12條 圖書館의 施設에 대한 基準은 따로 定하고 頒佈以前에는 縣立圖書館 및 鄕鎭의 書報閱覽室은 資料를 選定하여 購入하되 다음 內容原則을 基準으로 한다.

ㄱ. 三民主義를 宣揚한 것

ㄴ. 獨立을 爭取할 抗日思想書

ㄷ. 職業 및 實生活에 有關된 것

ㄹ. 敎養 및 社會風俗文化를 提高하거나 增進시키는데 有益한 것

ㅁ. 文字 內容이 모두 充實하고 印刷가 鮮明한 것

第13條 各省 敎育廳·局 및 國立圖書館은 圖書館幹部陣에 對하여 積極的으로 訓練하는 方法을 講究하여 各方面의 必要에 副應한다.

第14條 各級敎育行政機關은 반드시 最大限으로 個人 및 法人에 依하여 圖書館을 設立하도록 奬勵함과 아울러 寄附金으로 學校를 設立하는 條項을 만들어 이를 實現토록 奬勵한다.

第15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譯者 : 淑大講師·東國大圖書館司書主任)

10月은 1968年度 雜誌 契約 更新의 달입니다

삼가 아뢰옵니다.

菊香 그윽한 季節을 맞아 尊堂의 萬福을 仰祝하나이다. 今般 弊社는 急增하는 業務에 對備하여 事務室을 擴張 移轉하옵고 종전과 같이 유네스코 쿠퐁 代行機關으로써 海外學術雜誌 및 書籍 輸入代行業務를 繼續中이오니 倍前의 鞭撻과 聲援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1967. 10.

株式會社 팬 아메리칸 써비스

代表理事 呂 丞 九 拜

移轉場所 서울特別市鍾路3街13의5 裕林빌딩3층

電 話 74—3783·73—4262

國 際 私 書 函 1647

WORLD-WIDE SUE NET-WORK
PAS
PAN AMERICAN SERVICE

迅速 正確한 情報
誠實과 責任있는 事務
實費의 手數料